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 11. 11 선고 2021가합104138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부산고등법원 2022. 9. 1 선고 2021나59567 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 11. 11 선고 2021가합104138 판결

전 문

원 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소병훈

피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규

변 론 종 결 2021. 8. 26.

판 결 선 고 2021. 11. 11.

주 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6. 3. 체결된 증여계약을 153,934,246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53,934,24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6. 3. 체결된 증여계약을 822,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2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B의 의료법 위반 등

1) B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음에도 소외 C이 허위로 설립한 D조합을 양수한 후 그 명의로 ① 2008. 8. 8.경부터 2014. 8. 31.까지 부산 부산진구 E에서 ‘F요양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② 2012. 5. 21.경부터 2015. 1. 2.경까지 부산 연제구 G에서 ‘H요양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2) 또한 B은 2014. 11. 27. I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다음 그 명의로 2014. 12. 11.경부터 2017. 9.경까지 부산 연제구 J에서 ‘K요양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이하 B이 위 1)항 및 2)항 기재와 같이 개설·운영한 의료기관들을 ‘이 사건 의료기관’이라 한다.).

나. B에 대한 형사재판 결과

B은 이 사건 의료기관 개설·운영행위와 관련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1), 의료법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 2018. 11. 2. 징역 3년의 유죄판결이 선고되었고(부산지방법원 2017고합482호), 위 판결은 항소심(부산고등법원 2018노704호)을 거쳐 2019. 4. 26.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B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등

1) 원고는, B이 위와 같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개설·운영한 이 사건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원고로부터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의료기관에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기로 결정하였고, 2017. 5. 16.경 위와 같은 환수결정 내용을 B에게 통보하였다.

2) 2020. 4. 22. 기준으로, B이 원고에게 납부해야 하는 환수금의 총액은

17,657,133,762원(미납원금 16,589,315,522원과 미납연체금 1,067,818,240원의 합계액)이다(이하 원고의 B에 대한 위 요양급여비용 환수채권을 ‘이 사건 환수채권’이라 한다).

라. B의 재산처분행위 등

1) 피고는 B과 1979. 10. 12. 혼인한 법률상 배우자이다.

2) B은 2015. 6. 3.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고, 피고는 다음날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피고와 B이 2015. 6.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증여계약을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3)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L, 채무자 B, 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인 근저당권과 ②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L, 채무자 B, 채권최고액 3억 4,500만 원인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다(이하 위 각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4)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권액은 합계 5억 원이었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모두 말소되었다.

5) B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에 있다.

마.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매도

피고는 2017. 8. 25. 소외 M, N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6억 3,000만 원에 매도하였고, M, N은 2017. 12. 20. 각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 14호증의 각 기재, 주식회사 L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1) 피보전채권의 존재

가)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되지 않은 의료기관에서 요양급여가 행하여졌다면 해당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 해당되지 않아 해당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해당 의료기관이 이를 위반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때에는 그 요양급여비용 전부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고(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두21669 판결 등 참조),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개설한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그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의한 부당이득징수처분의 대상이 되므로,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 명의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부당이득징수처분의 상대방이 되고, 명의를 대여 받아 해당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한 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에 따라 부당이득징수처분의 상대방이 된다(대법원 2020. 7. 9. 선고 2018두45190 판결).

나)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발생되어야 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23718 판결,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다2777 판결 등 참조).

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① 이 사건 의료기관이 개설된 시점이 모두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이전이므로 위 증여계약 체결 당시에 이미 이 사건 환수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다고 할 것이고, ②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F요양병원과 H요양병원의 운영 실태를 조사한 시기(2014. 8. 18. ~ 2014. 8. 20.)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일 뿐만 아니라 시기상으로도 근접하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환수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도 있었다고 보이며, ③ 실제로 2017. 5. 16.경 원고의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에 따라 이 사건 환수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환수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피고도 원고의 피보전채권의 존재 및 액수에 관하여는 특별히 다투고 있지 아니하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가) 감정인 O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주식회사 L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이 5억 800만 원(또는 5억 1,500만 원)인 사실을 알 수 있고,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위 부동산 가액보다 적은 5억 원인 사실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B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그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

나) 이에 대해 피고는, B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게 된 것이고, B이 이 사건 의료기관 개설·운영행위와 관련하여 최초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시점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이후인 2016. 12. 15.경이었기 때문에 피고와 B은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로 인하여 B의 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가 부당하게 감소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1 내지 3, 10, 13,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F요양병원과 H요양병원의 운영 실태를 조사한 시점으로부터 약 10개월 후에 B이 자신의 배우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점, ② 이 사건 의료기관 운영 실태에 관한 조사가 실시되자, B이 위

의료기관들을 계속 운영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서 위 의료기관들을 폐업한 후 I조합을 설립하여 ‘K요양병원’을 새로 개설하여 운영하였던 점, ③ 피고는 B의 배우자로서 이 사건 의료기관의 운영 실태와 B의 재산 상태를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B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위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할 수밖에 없었다는 불가피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B의 사해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수익자인 피고에 대해서도 그 악의 추정을 뒤집고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가 된다는 사정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의 방법

1) 관련 법리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다20612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될 당시에 이미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사해행위 후에 말소된 사실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5억 원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

다. 가액배상금액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시에 가까운 2021. 6. 3.경의 이 사건 부동산 시가인 11억 2,200만 원을 기준으로 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가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의 이 사건 부동산 시가인 5억 800만 원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가액배상금액 산정기준시에 관한 판단

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이후에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가액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다.

나) 그러나 수익자가 현재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사해행위 이전에 그 목적물에 설정되어 있던 저당권설정등기가 사해행위 후에 변제 등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 또는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 등에 해당하여 수익자가 가액배상을 하는 것이라면, 사해행위 이후에 그 목적물의 가액이 급등하는 등의 사정이 발생하더라도 시가 상승으로 인한 이익이 수익자에게 귀속되게 되나, 수익자가 사해행위 이후에 그 목적물의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면, 소유권을 상실한 이후에는 그 목적물의 시가가 상승하더라도 그 이익이 수익자에게는 전혀 귀속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위 두 경우 사이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또한 부동산은 그 시가가 계속적으로 변동되기 마련이다. 특히 수익자가 사해행위로 취득한 목적물의 소유권을 상실한 이후에 수익자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던 사정(예컨대, 갑자기 부동산 경기가 호황이 되었다거나 해당 지역이 개발되었다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그 부동산의 가치가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급격하게 상승한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수익자가 채권자에게 가액배상으로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사실심 변론종결시’의 부동산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면, 수익자는 부동산 시가 상승으로 인한 이익은 전혀 누리지 못하였음에도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한 이후에 발생한 부동산 시가의 상승이라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시가 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채권자에게 가액배상으로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그 금액은 수익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의 수 배 또는 수십 배에 이르게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²⁾. 이는 사해행위취소제도가 추구하는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고, 수익자에게는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가 된다(원래 채권자와 아무런 채권채무관계가 없었던 수익자가 채권자취소에 의하여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형평의

견지에서 법이 특별히 인정한 것으로서, 그 가액배상의 의무는 목적물의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됨으로써 성립하고, 그 외에 그와 같이 불가능하게 된 데에 상대방인 수익자 등의 고의나 과실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금액(6억 3,000만 원)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액(5억 원)을 공제한 금액은 1억 3,000만 원인데, ② 2021. 6. 3.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11억 2,200만 원)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액(5억 원)을 공제한 금액은 6억 2,200만 원으로, 위 두 금액의 차이가 4억 9,200만 원이며, 후자가 전자의 약 478%에 이른다.

다) 따라서, 수익자가 사해행위 목적물의 시가 상승이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에서 사해의사를 가지고 일부러 그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하였다거나, 형식적으로만 사해행위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처럼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수익자가 계속 소유권을 보유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수익자가 사해행위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그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처분 당시의 목적물 가액을 기준으로 가액배상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수익자가 사해행위 목적물을 처분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그 이익이 발생한 날부터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면 될 것이다.

3) 가액배상금액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갑 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7. 8. 25. M, N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서 지급받은 금액인 6억 3,000만 원을 그 당시의 이 사건 부동산 시가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부동산 시가 6억 3,000만 원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5억 원을 공제한 나머지 1억 3,000만 원에 대하여 M, N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날의 다음날인 2017. 12. 21.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1. 8. 26.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합한 153,934,246원[= 1억 3,000만원 + 23,934,246원{1억 3,000만 원 × 연 5% × (3년 + 249일/365일)}]이 피고가 이 사건 사해행위로 취득한 이익, 즉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가액배상 금액이라 할 것이다(수익자가 사해행위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은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과 수익자가 취득한 이익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수익자인 피고가 취득한 이익이 원고의 피보전채권액보다 적은 금액이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와 B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6. 3. 체결된 증여계약을 153,934,246원의 범위에서 취소하고, 가액배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53,934,246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일주, 판사 최해진, 판사 이범용

별지

부 록

1. (1동의 건물의 표시)

부산광역시 남구 , , 동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남구

철근콘크리트조

경사슬래브지붕 25층

아파트

지1층 425.57㎡

1층 254.095㎡

2층 448.24㎡

3층 448.24㎡

4층 448.24㎡

5층 448.24㎡

6층 448.24㎡

7층 448.24㎡

8층 448.24㎡

9층 448.24㎡

10층 448.24㎡

11층 448.24㎡

12층 448.24㎡

13층 448.24㎡

14층 448.24㎡

15층 448.24㎡

16층 448.24㎡

17층 448.24㎡

18층 448.24㎡

19층 448.24㎡

20층 448.24㎡

21층 448.24㎡

22층 448.24㎡

23층 448.24㎡

24층 448.24㎡

25층 448.24㎡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부산광역시 남구 대 166003㎡
2. 부산광역시 남구 대 13247㎡
3. 부산광역시 남구 대 152031㎡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10층 호 철근콘크리트조 196.84㎡

(대지권의 표시)

- 1, 2, 3 소유권대지권 331281분의 74.3975

끝.

1) 일부 인정된 죄명 사기

2)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법률행위 있는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